

의안번호	2126268
의 퇴 인	최형두의원
회 답 일	2024. 01. 30.
추 계 번호	24C0035

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,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,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·운영,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1억 7,300만원, 2029년 8,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300만원(연평균 1억 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6조)	90	—	—	—	—	90	18
종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(안 제16조)	15	15	15	15	15	75	15
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8조)	8	8	8	8	8	38	8
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운영(안 제51조)	60	60	60	60	60	300	60
합 계	173	83	83	83	83	503	101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의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의 계획과 시책 등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수립)	을 종합하여 5년마다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
2	안 제16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 위원회 구성 등)	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·교통·재해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,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9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	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20조(이주대책)	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36조(해양관광산업의 진흥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해양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37조(휴양·치유관광산업의 진흥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·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휴양·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38조(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에서의 수상레저활동과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39조(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남해안권 문화관광상품의 개발·생산 및 판매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41조(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소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는 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42조(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남해안권 지역축제를 남해안 해양관광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	
11	안 제43조(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44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	국가는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내 도로,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3	안 제46조(조세의 감면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·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14	안 제47조(부담금 등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천법」, 「조지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기반시설 설치비용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대체초지조성비, 생태계보전부담금, 환경개선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48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16	안 제49조(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설치 등)	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	의무규정
17	안 제51조(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)	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8	안 제53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설치)	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○	
2	안 제16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등)	○	
3	안 제19조(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4	안 제20조(이주대책)		
5	안 제36조(해양관광산업의 진흥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, 해양레저스 포즈 활성화, k관광 섬 육성 지원, 해양레저 축제 지원, 관광전문인력 양성 등
6	안 제37조(휴양·치유관광산업의 진흥)		
7	안 제38조(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)		
8	안 제39조(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)		
9	안 제41조(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)		
10	안 제42조(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)		
11	안 제43조(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)		
12	안 제44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13	안 제46조(조세의 감면)	×	- 감면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14	안 제47조(부담금 등의 감면)		
15	안 제48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○	
16	안 제49조(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설치 등)	×	- 조직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조직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17	안 제51조(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)	○	
18	안 제53조(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설치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 및 국고보조금·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3년)
안 제36조(해양관광산업의 진흥) 안 제37조(휴양·치유관광산업의 진흥)	- 웰니스관광 육성(51.8억원) -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지원(30억원) -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(7억원)
안 제38조(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) 안 제39조(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)	-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(4억원) -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(36.5억원)
안 제41조(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)	- k관광 섬 육성 지원(50억원)
안 제42조(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)	- 해양레저 축제 지원(10억원)
안 제43조(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)	- 관광전문인력 양성(26억원)

주: 남해안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관광산업 진흥 사업 예산임
 자료: 문화체육관광부, 해양수산부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예상
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6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16조)

-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민간위원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15명으로 가정¹⁾
 -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²⁾
 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15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1,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$15명 \times 4회 \times 250,000원 = 15,000,000원$

1)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3명,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8명임

2)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및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2022년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

[표 4]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6조)	15	15	15	15	15	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8조)

□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-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민간위원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하되,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15명으로 가정
-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사례 및 제정안에 따른 심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³⁾
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
□ 제정안에 따라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15명 위촉하여 매년 2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75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$15\text{명} \times 2\text{회} \times 250,000\text{원} = 7,500,000\text{원}$

3)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2021년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,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,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,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임

[표 5]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8조)	8	8	8	8	8	38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(안 제51조)

-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운영에 매년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및 웰니스 업계 대상 웰니스 관광 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6,000만원을 편성하였음

[표 6]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운영(안 제51조)	60	60	60	60	60	3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